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상숙의원 외 9명으로부터 2017.5.24. 제출되어 5. 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지원을 경영안정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5조)
- 소상공인 관련 단체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윤태천의원외9명으로부터 2017. 5.24 .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동물 등록에 대하여 규정(안 제12조~제15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21조)
 - 동물의 구조·포획, 동물의 치료·보호, 안락사 등 담당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사업 등 추진

3.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①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는 국가의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반려동물과 이에 따른 유기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안산시민이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며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조례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입안되는 것을 감안하여 각 조항에서 반려동물등의 제한적인 표현보다는 동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의 발행주기 변경 및 1회 발행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할 통한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발행 도모

2. 주요내용

- 시정소식지 월 2회 발행을 월 1회 발행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시정소식지 규격 및 1회 발행부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 기타 전체 조문 용어를 순화 용어로 정비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2회, 회당 25,000부를 발행하는 안산시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을 월1회로 줄이고 부수의 제한을 없애 발행 횟수를 줄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획 및 취재를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월2회 발행에 따른 시의성 보다는 충실한 내용을 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현재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배부처가 정기구독자 18,500부, 다중이용시설 비치 6,500부라고 되어있어 향후 월1회 5만부 정도 발행을 할 경우 발행되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와 홍보방안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주요 개정 문구 중 「주민」을 「시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자

(지방자치법 제12조)로 명시 되어있으나 시민은 좀 더 적극적인 사회 구성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 시민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위촉 대상은 안산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안산에 생활기반을 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위촉 활용.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보상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기자증 발급근거를 마련 시민기자단의 취재활동 지원.

2. 주요내용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제공(안 제4조제3항)
-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시민에게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안 제4조제4항)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위촉 대상 확대(안 제5조제2항)
- 기자증 발급을 통한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안 제5조제5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가 갖고 있는 주요 성격은 안산시가 대내·외에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홍보자료를 발굴하는 기자의 범위를 안산시 거주 시민 뿐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홍보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민기자의 위촉대상을 전문가뿐 아니라 안산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하여 할 사항으로 사료됨.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사무의 위임 조례 제정범위와 위임 형식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소관의 권한 없는 위임사무를 삭제함.(안 별표2)

소관부서	단위사무	관련 법령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 단위사무 위임범위 구체화 및 관련 법령의 명확화.(안 별표2)

소관부서	단위사무	관련 법령
체육진흥과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징수 (체육시설업에 한함)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를 준용하여 그동안 추진하여온 소관 부서 사무중 소관 권한이 없는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단위사무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 으로, 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으로, 취업자의 해임 요구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①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과태료 부과는 동법제67조(과태료)⑤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

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법률용어로 순화 변경하고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업에서 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지난 1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 조례를 제정,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안 제3조)
- 재난원인 제공자 능력으로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할 경우, 또는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대상(안 제4조)
- 주거지를 잃은 사람에 대한 임시 주거대책, 공공시설의 철거 및 복구, 재난 피해지역의 시설물 철거, 오염물 및 잔재물 처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안 제5조)
- 재난복구 수습은 직접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을 통하여 지원(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재정 조례는 그동안 국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지원 및 수습을 하여왔으나 지난 1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이 개정되고, 경기도가 도내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하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8.일 전부 개정)」가 마련됨에 따라 다소 지역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으나 우리시가 지역내 긴급을 요하는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지원 및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조례안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가 지향하는 것이 피해수습과 관련한 복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긴급지원 시 선지원 후 심의 등 지원의 방법이나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됨.

안산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소관 중앙부처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인용조항 개정(안 제5조제1항).
- 소관 중앙부처 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5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시행 (2016. 11.29.)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소관 중앙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규정정비 : 재정보증한도액 조정 (안 제1조, 제7조).
 -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상
 - 기타 회계관직 :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상
- 회계관직 명칭변경(안 제2조제1호).
 - 경리관 →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고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별표 1)
 - 관외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 1] 개정

현 행						개 정 안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나.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4조)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 반영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5.1.6. 대통령(제26042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중 실제 관외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골자로는 현재 운임비용을 “정액제”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비는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며, 왕복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실비지급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내 출장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철도, 선박, 자동차, 선박 등 운임비용 및 숙박비는 현실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12.27.공포, 2017.3.28.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의 분법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된 규정 및 조례에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현행 제7조,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위탁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안 제2조)
- 이륜자동차의 등록사무 위탁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 함 (안 제3조,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분법에 따른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된 규정 및 조례에 따로 규정할 때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륜자동차의 등록사무 위탁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 조세 부과에 적정성을 기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의 입장에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제14476호,2016.12.27.공포, 2017. 3.28.시행)함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 「지방세기본법」의 분법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이관함 (안제2조)

3.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금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일반적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등을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체납

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조례안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12.27.공포, 2017.1.1.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 30.공포, 2018. 1.1.시행)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내용의 반영 등 시세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한 점에 맞추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기준도 형평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규정 위반 시 추징규정 신설(안 제2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관계법 제·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신설되어 변경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조의2)
-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최소납부세제) 관련규정 정비(안 제11조의2)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의 종료에 따른 연장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한 점에 맞추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 규정과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 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2. 제안이유

-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 계획」【행자부 자치행정과-634호(2017.1.19.) 및 경기도 자치행정과-1445호(2017.1.20.)】호에 따르면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 협의회의 명칭
 -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처리하는 사무
 -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 및 지출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 처리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일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②지방자치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1981.08.28일 설립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04.03.일 설립되어 회의 운용

하여 왔으나

- 의회의결을 거치는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10.31.)에 따라 행정협의회 및 자치단체 간 각종 협의기구 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준용하여 권고함에 따라 규약을 제정(2017.2.21.)하고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본 동의 의결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추진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규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임무 관련 법령 변경(안 제3조)
- 평생교육협의회 관련 법령 변경(안 제5조)
- 안산시평생학습관의 기능 관련 법령 변경(안 제10조)
- 수강료등의 면제 관련 법령 변경(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사항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각 소관의 단체(평생교육협의회)등에 평생교육의 실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포함 및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산시평생학습관의 기능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5.26. 제출되어 5.3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신길셋별작은도서관 및 사2동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

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7. 12. 10. ~ 2027. 12. 9.(10년)
- 시설명 : 신길셋별작은도서관 등 2개소
- 신길 셋별, 사2동 꿈을키우는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구 분	신길셋별작은도서관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건물연면적	192㎡	155.73㎡
위탁기관	안산YMCA	안산YMCA
위탁기간	2014. 12. 10. ~ 2017. 12. 9. (3년)	2014. 12. 10. ~ 2017. 12. 9. (3년)
직원현황	3명 (관장 1명 외 2명)	3명 (관장 1명 외 2명)
운영시간	09:00 ~ 18:00 (휴관 : 월, 법정공휴일)	09:00 ~ 18:00 (휴관 : 월, 법정공휴일)

나. 위탁내용

【신길셋별작은도서관】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55(신길동)
- 위탁기간 : 10년(2017. 12. 10. ~ 2027. 12. 9.)
 - ※ 재위탁 기간 : 2017. 12. 10. ~ 2020. 12. 9.(3년)
- 시설규모 : 연면적 192㎡(삼익아파트 종합복지관 3층)
- 위탁사무 : 신길셋별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3명 93,052천원(시비 100%)
 - ※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동)
- 위탁기간 : 10년(2017. 12. 10. ~ 2027. 12. 9.)
※ 재위탁 기간 : 2017. 12. 10. ~ 2020. 12. 9.(3년)
- 시설규모 : 연면적 155.73㎡(경우경로당 2층)
- 위탁사무 :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3명 93,263천원(시비 100%)
※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심의의 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 및 교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필요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신길샛별, 사2동꿈을키우는)의 위탁기간이 2017. 12. 9.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및 교육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